



보건복지부
질병관리본부

보 도 참 고 자 료

배 포 일	2018.7.6. / (총 5매)	담당부서	미래감염병대비과
과 장	이 상 원	전 화	043-719-7260
담 당 자	신 나 리		043-719-7262

감염병 대응을 위해 민·관이 손을 맞잡다!

-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간의 업무협약(MOU) 체결 -

- ◇ 감염병 위기대응 및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양성에 긴밀한 협력 약속
- ◇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·대응 역량 강화 기대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감염학회와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고, 7월 6일(금) 대한감염학회(이사장 김양수)와 업무협약(MOU)를 체결하였다.
-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는 모두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협정을 통해,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,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
 -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, 질병 예방·관리를 위한 전략 개발, 위기상황시 공동대응 등 6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.
-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신종 감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양성과 긴급대응능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

- 이번 협약을 통해 질병관리 컨트롤 타워와 감염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감염병 공동대응으로, 향후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.

- 붙임 1. 업무협약식 개요
2.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 간의 업무협약서

붙임1

업무협약식 개요

□ 개요

- 일 시: '18년 7월 6일(금) 15:00~16:00
- 장 소: 서울 충정로 질병관리본부 사무실
- 참석자:
 -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, 긴급상황센터장 나성웅, 미래감염병대비과장 이상원
 -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양수, 정책기획이사 송준영

□ 주요 업무협약 내용

- 감염병 유행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,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
- 국가 급·만성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협력
- 감염병대응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훈련에 관한 협력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전략과 방법 개발을 위한 협력 등

붙임2

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 간의 업무협약서

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는 국민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, 교육, 공동연구·사업 등의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

이 협약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, 유행과 위기 상황의 대비와 대응 역량을 제고 하며,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,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기본원칙

1. 협력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로 한다.
2. 두 기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.

제3조 협력분야

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
- 가.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,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.
- 나. 국가 급·만성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협력한다.
- 다.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협력한다.
- 라. 학생, 전공의, 전임의, 보건전문가와 연구자, 보건담당 공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협력한다.
- 마. 세미나와 심포지엄, 포럼 등의 학술회의 공동개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전략과 방법을 개발한다.
- 바. 기타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4조 비밀유지

1. 두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2. 두 기관은 본 협약서의 이행 중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를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 효력발생 및 협력기간

1. 이 협약서는 두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2. 협력기간은 이 협정서에 두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5년간 재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 기타

1. 이 협약서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두 기관에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이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여야 하고,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3. 제4조에 명시된 비밀유지 사항은 본 협정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양 기관이 동 의무의 폐기에 동의할 때까지 유효하다.

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각 원문은 모두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

2018년 7월 6일



질병관리본부
본부장 정은경

(서명)



대한감염학회
이사장 김양수

(서명)